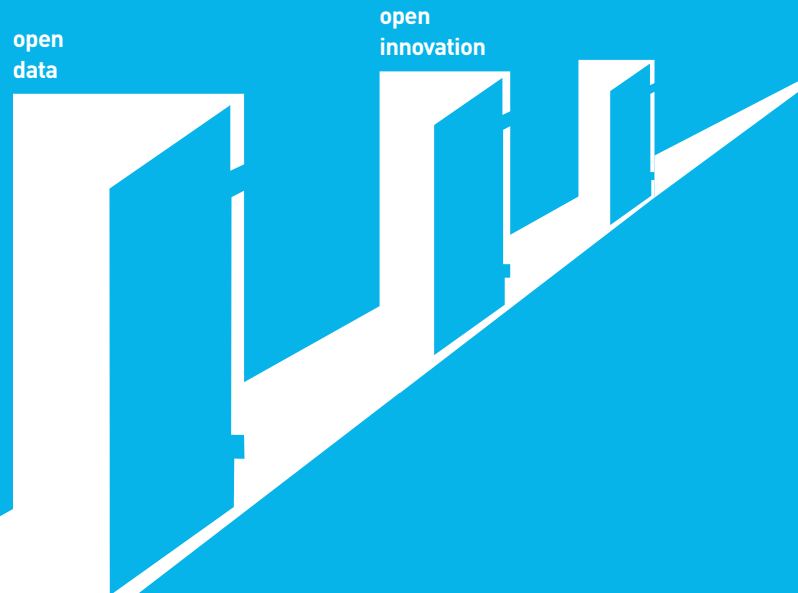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안내서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안내서

OPEN DATA, OPEN INNOVATION



Contents

I.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제도

1.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이란	05
2.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	05
3. 분쟁조정대상	06
4. 분쟁조정의 효력	08

II.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절차

1. 신청 및 접수	09
2. 사실조사	10
3. 분쟁조정	10
4. 후속조치	11

III.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기준

1. 원칙	12
2.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12
3.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19
4. 공공데이터 이용조건 및 제공비용 등	21

I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제도

01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이란

2013년 10월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되면서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됨

그럼에도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공데이터를 제공중단하는 경우 국민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한 조정 절차를 통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이 도입됨

02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법 제29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함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외에도 공공기관 데이터 담당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4개(개인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 저작권, 기술적 문제 등)의 전문 조정부를 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쟁에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모색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또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03 분쟁조정대상

가.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공공데이터 제공거부는 신청인이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다가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을 받은 경우 등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처분을 의미함

공공데이터 담당자가 전화로 제공거부 의견을 밝힌 경우 등 공공기관의 장이 내린 공식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거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받는 등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처분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또는 중단처분이 없는 경우 형식적 요건 미비로 보아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7조 (조정신청의 보정요구등)]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처분은 신청 데이터의 전체 거부에 한하지 않으며, 일부 제공결정이나 조건부 제공결정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신청에 대한 '부분적 거부'도 포함될 수 있음

나.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은 공공데이터법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데이터의 전체중단 뿐만 아니라 일부중단도 포함함

공식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처분이 없더라도 이미 제공하고 있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

[공공데이터법 제2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①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04
분쟁조정 효력**

[조정 성립]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당사자가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9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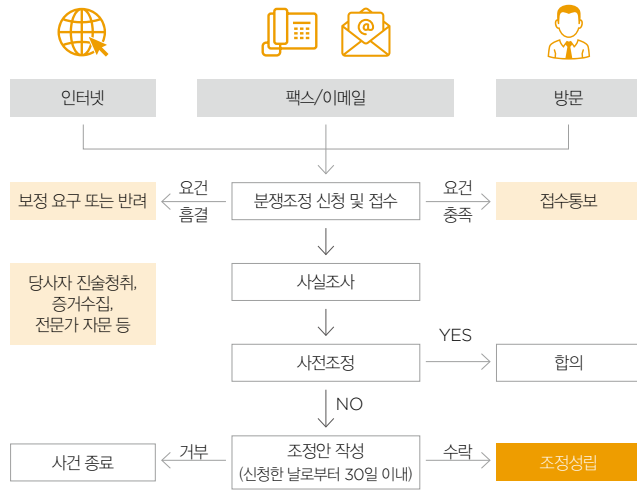
[조정 불성립]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됨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분쟁조정 대상이 되었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처분일로부터 90일내 제기)



II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절차



01 신청 및 접수

공공기관의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서(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www.odmc.or.kr)에 접수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법인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할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없으나,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원활한 조사에 도움이 됨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적합한 신청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분쟁조정신청의 내용을 그 상대방에게 통보함(공공데이터법 제31조제2항)

02 사실조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에 관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실시함(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1항)

신청인에게는 데이터 신청이유 및 활용목적, 피신청인에게는 데이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한 경위 및 법적 근거를 주로 청취함

당사자 의견, 제출자료, 위원회 자료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 조치의 타당성을 검토함

03 분쟁조정

가. 사전조정

조정 전 합의권고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협의를 통해 원만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조정 전 합의권고를 할 수 있으며(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5항), 합의 성립 후 합의사항이 이행되면 해당 사건을 종결함

분쟁조정 신청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등

사실조사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신청인이 제공거부 사유를 양해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는 등 사전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함

나. 조정결정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의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 5-7인으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조사결과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조정 방안을 논의·의결함(공공데이터법 제29조제6항)

*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4항),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14조제4항)

위원회는 조정부 회의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제공하며, 조정안 제공일로부터 15일내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고 조정절차는 모두 종결(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6항)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도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신청인은 후속조치로 행정소송을 제기(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할 수 있음

04 후속조치

조정결정사항의 이행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공기관은 위원회의 '조정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

조정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분쟁조정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공공데이터법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조정사례 공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조정경과, 결정사항, 기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원 및 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정리하여 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 등에 공개할 수 있음(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 27조)

III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기준

01 원칙

제공거부의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근거로 하여, 제공대상임에도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한 경우 해당 거부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공토록 권고

신청 데이터 중 일부가 공공데이터 제공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제공할 수 있음에도 전체 신청에 대해 제공거부한 경우, 해당 거부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공 가능한 데이터를 분리하여 제공하도록 권고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의 경우에도 공공데이터법 제3조제4항에 반하는 부당한 이용제한이나 같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하여 제공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공데이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공비용을 부과하도록 권고

제공중단의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2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 데이터를 제공중단한 경우 해당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공중단조치 철회를 권고

02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다만, 1)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2) 저작권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외(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각호)

공공기관은 위 1) 및 2)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제공해야 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2항)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음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⑥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의 정보는 제외함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함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사례	
구분	관련 분쟁조정사건
제9조제1항제1호	경찰청 범죄발생위치정보(2015-007), 국세청 공동주택 공시 가격 데이터 등 (2015-021),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데이터 (2016-012), 국세청 법인 매출액 데이터(2017-031), 고용노동부 전국기업산업재해현황 데이터 등(2018-007 및 008), 대검찰청 범죄분석 데이터(2018-020)
제9조제1항제3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2017-003), 소방청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및 개요 데이터(2018-012)
제9조제1항제5호	국립춘천박물관 문화유물 3D데이터(2018-010)
제9조제1항제6호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비이력 데이터(2014-014),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및 제원정보(2015-012, 2016-005), 한국연구재단 KRI 연구자 정보(2016-016),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2017-007, 2017-028, 2018-014), 소방청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및 개요(2018-012),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지급정보(2018-024)
제9조제1항제7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품 성분에 대한 보험청구실적정보 (2014-008), 국방부 군매점 상품정보(2017-004),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자동차 정비업체정보(2017-018), 보은군 토석채취허가데이터(2018-006),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데이터 등 (2018-007 및 008), 금융감독원 공매도 잔고데이터 (2018-009)
제9조제1항제8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2014-016, 2015-021, 2017-003), 경찰청 범죄발생사좌표 데이터(2015-007)

* 상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 조정사례 참조

제3자 권리 포함 정보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국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외 제3자의 권리(저작권, 초상권 등)가 포함된 데이터라면 해당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제공이 가능함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모두 공공기관에 귀속되어 있다면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나, 경우에 따라 작성자의 저작권 등 다른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의 내용, 작성자, 작성 목적 및 해당 데이터의 작성에 관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제3자 권리포함여부 및 이용허락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내용이 수치 데이터, 간단한 표나 그래프 등 저작권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나, 작성자의 창작성 있는 표현(글, 그림, 사진, 일러스트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 경우 작성자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업무상저작물을 작성한 것이라면 공공기관이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상저작물이 아닌 경우나 외부의 제3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자가 저작권자라고 보아야 함

공공데이터 작성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이 있는 경우 '권리의 귀속'을 규정하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관련사례	
구분	관련 분쟁조정사건
제공권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문제(2015-013), 서울시 관광 콘텐츠(2015-018)
제공거부 타당성 확인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2014-015), 국립수산과학원 발간물(2015-00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기출·모의고사 문제 및 답(2015-010),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2017-006),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념물 3D데이터(2017-030), 독립기념관 독립운동 데이터(2018-018)
기타	권리자 의사 확인 후 제공여부 결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보고서(2014-002), 농촌진흥원 발간물(2015-006) 기존 이용약관에 따라 제공함이 타당함을 확인: 한국거래소 주식가격정보(2014-006)

* 상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 조정사례 참조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추가 생성, 가공 등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7조제1항),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

[참고 : 정보공개법 관련 판례]

대법원은 정보의 '보유·관리'와 관련하여,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0.2.11.선고 2009두6001판결)

관련사례	
구분	관련 분쟁조정사건
제공권고	국립농업과학원 발간물(2015-004), 행정안전부 봉사 참여정보서비스 API(2016-015)
제공거부 타당성 확인	국립농업과학원 발간물(2015-003), 농촌진흥청 발간물(2015-005), 국립수산물과학원 발간물(2015-008), 2018-020
기타	국토교통부 도로이정표 정보(2014-003),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비업체 데이터(2017-018) * 지자체가 수집입력한 정보라 하더라도 주무부처의 시스템에 보유·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일괄하여 제공 토록 권고

* 상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 조정사례 참조

03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공공데이터법 제3조제1항)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함(공공데이터법 제3조제2항)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나(공공데이터법 제3조제3항), 아래의 제공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음(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28조제1항제1호)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제28조제1항제2호)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제28조제1항제3호)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제28조제1항제4호)

관련사례	
구분	관련 분쟁조정사건
제공중단 철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2015-001)
제공중단 타당성 확인	서울특별시 발간물(2016-020)

* 상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 조정사례 참조

04 공공데이터의 이용 조건 및 제공 비용

이용조건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제공목록 및 이용조건 등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하며(제19조제3항), 이용조건 부과 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안됨(공공데이터법 제3조제4항)

즉,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제공비용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경비, 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함(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공공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이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음(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사례

구분	관련 분쟁조정사건
이용조건	국토교통부 법령질의회신집(2018-017)
제공비용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및 제원정보(2018-025)
이용조건 및 제공비용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2018-028), 소방청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및 개요(2018-012)

* 상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 조정사례 참조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소재지)	
해당 공공기관	기관명	주소(소재지)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부서명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전화번호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전자우편주소	
해당 공공데이 터	명칭		
	내용		
분쟁 유형 및 처분일	분쟁 유형	[] 제공거부 [] 제공중단	
	처분일	년 월 일	
제공거부 및 중 단의 사유와 경과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항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자 르 는 선 -----

접수증

접수증		신청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직인